고용노동부 **보도참고자료** 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7. 24.(토) 배포 즉시 / 총 8 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과 장 이현옥 서기관 박수연	044-202-7269 044-202-7270
	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과 장 송유나 사무관 이재인	044-202-7190 044-202-7193
	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	과 장 김진숙 사무관 오세창	044-202-8890 044-202-8893
	건설산재예방정책과	사무관 류상훈	044-202-8938
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과 장 엄대섭 사무관 천춘희	044-202-7347 044-202-7359
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	과 장 박일훈 사무관 제호민	044-202-7404 044-202-7413
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과 장 김동현 사무관 이강욱	044-202-7554 044-202-7559
	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과 장 김부희 사무관 이찬웅	044-202-7064 044-202-7073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·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□ 오늘(7.24.) 국회 본회의에서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**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** 일부개정안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**「산업안전보건법」** 일부개정안 및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**「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** 일부개정안 등 **고용노동부 소관 6개* 법률안**이 의결됐다.

*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, 산업안전보건법,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, 고용정책 기본법, 근로복지기본법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6개월)

☞ 직업능력정책과 소관(044-202-7270)

<1>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

○ **국민**의 **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**을 **지원**하기 위하여 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명을 **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**으로 개정하고 **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** 및 **범위**를 **확대**했다.

○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** 등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, **현행 법률**은 **지원대상**을 **근로자, 실업자 등**으로 규정하고 있어 **지원이 제한적**이라는 **오해**가 있었다.

- **법률상 지원대상**을 **'국민'**으로 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**일하고자 하는 국민**에게 **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**할 계획이다.

  * 정부 지원의 실질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

○ **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**도 **확대**된다.

- 그간 직무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, 앞으로는 **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**까지 폭넓게 지원한다.

- **디지털·신기술 분야 기초능력**뿐만 아니라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**창의적 사고력, 인문소양 과정** 등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**창의·융합적 인재**가 **양성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2>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명령 부과

○ 코로나19 이후 **감염병 확산 방지**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**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**이 커짐에 따라,

- **훈련기관**에 **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의무**를 부과하고, **미이행** 시 **시정명령 등 행정처분**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.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시행: 공포일)

☞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소관(044-202-7193)

<1> 취업을 위해 노력한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○ 그동안 **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**했음에도 **취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촉진수당*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**(18~34세)들은, 앞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6개월간 매월 **50만원**

○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**국민취업지원제도***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, 청년이 소득·재산 요건**을 충족해도, 최근 2년 내 **일정 기간**(100일 또는 800시간) **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**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어,

*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

** 가구 단위 월평균 **소득**이 **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**면서 **재산 합계액**이 **4억원 이하**

- **인턴 활동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**했거나, **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**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여 **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**가 많았다.

○ 이에,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취업지원이 절실한 **청년들에 대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·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**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함에 따라,

- 더 많은 청년들이 생계의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단, 소득·재산 요건은 구직촉진수당에만 적용되며, **취업지원서비스**는 18~34세 **청년이라면 소득·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**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

※ 붙임: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내용 인포그래픽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1년)

☞ 직업건강증진팀(044-202-8893), 건설산재예방정책과(044-202-8938) 소관

<1>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

○ 사업주로 하여금 **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)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** 하고,

-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**는 **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·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**을 갖추도록 했다.

 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사업주가 △휴게시설 미설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, △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- 휴게시설의 면적·위치 등 **적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**은 향후 노사·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**하위법령**을 통해 **구체화**될 **예정**이다.

○ 사업장 내 **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이 설치**되도록 하여, **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**하고 **산업재해 예방에 기여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2>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 변경

○ **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**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**건설공사발주자(자기가 직접 공사를 시공 하는 경우*를 포함)**로 **변경**하여 **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**질 수 있도록 했다.

  * "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는 자"를 말함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(시행: '22.1.1.)

☞ 고용보험기획과 소관(044-202-7359)

<1>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시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

○ 현재 **고용·산재보험**은 **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**에 해당하는 경우, 고용·산재보험료의 **납부기한을 연장**하고 **납부유예가 종료되면 "일시"에 보험료를 납부**하도록 하고 있어,

- 특히 **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종료**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더한 **보험료 일시납부**로 **사업주**의 **부담**이 있었다.

○ 이에, 해당 보험료의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**체납이 3회 이상***인 경우 **"분할납부"****할 수 있는 **근거가 마련**되어,

- **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종료**에 따라 **체납**된 **보험료**를 **일시납부**하여야 하는 **부담**이 **완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예시) 고용위기지역 1차('18.1.1.~12.31.) 지정시 보험료가 6개월간 납부유예되면, 납기일은 1월 보험료 8.10, 2월 보험료 9.10. 등으로 6개월간 순연되는데, 사업주가 순연된 납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3개월인 경우 체납 3회에 해당

** 건강보험료의 경우, 체납 3회 이상인 때 분할납부 가능하여 이를 준용

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6개월)

☞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(044-202-7413)

<1>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근거 명시

○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**급박**하고 **예측이 어려운** 고용위기 상황에 **신속**하고 **체계적**으로 **대응**할 수 있도록 두 제도에 대한 **법률적 기반**을 **명확화**했다.

<2> 기본적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

○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**기본적 운영절차**를 **지정신청-심의-해제** 과정으로 규정했다.

-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지정신청 근거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사업주단체 등의 **신청 근거**를 두고,
-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**고용정책심의회 심의**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했으며,
- 고용사정 호전 등 **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**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**지정을 해제**할 수 있는 **근거**를 **신설**했다.

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6개월)

☞ **퇴직연금복지과 소관(044-202-7559)**

<1> 배달·운전 등 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·운영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**배달·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**이 이용할 수 있는 **휴게시설**을 **설치·운영**할 수 있다.

*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함

- 또한,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법인 또는 단체**에 휴게시설의 **운영**을 **위탁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**운영**에 **필요한 비용**을 **지원**할 수 있도록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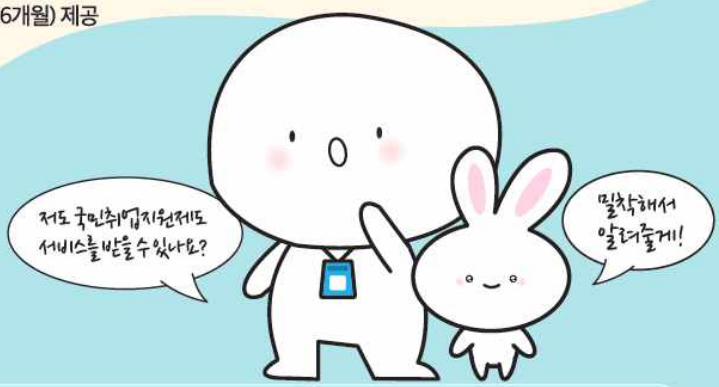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개정으로 **이동하며 일하는 사람**의 **휴식권 보장**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1 | **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내용 인포그래픽**
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

이제 청년이라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!!

* I 유형 지원내용 :
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 X6개월) 제공



참여요건

변경 전 »

구분		연령	소득	재산	취업경험
I 유형	선발형 청년	18~34세	중위소득 120% 이하	4억원 이하	2년 이내 100일 (또는 800시간) 미만

변경 후 »

구분		연령	소득	재산	취업경험
I 유형	선발형 청년	18~34세	중위소득 120% 이하	4억원 이하	경험 무관

고용노동부

붙임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수급요건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</th><th>연령</th><th>소득</th><th>재산</th><th>취업경험</th><th colspan="2">지원내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Ⅰ유형</td><td>요건심사형</td><td rowspan="4">15~69세
(청년: 18~34세)</td><td>중위소득 50% 이하</td><td>3억원 이하
(청년: 4억원↓)</td><td>최근 2년 이내 100일
(또는 800시간) 이상</td><td rowspan="4">취업지원서비스</td><td rowspan="3">구직촉진수당
(50만원×6개월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선발형</td><td>중위소득 50% 이하</td><td>3억원 이하</td><td>최근 2년 이내 100일
(또는 800시간) 미만</td></tr>
<tr><td>(청년)
120% 이하</td><td>(청년)
4억원 이하</td><td>(청년)
현행: 최근 2년 이내 100일
(또는 800시간) 미만
⇩
개선: 취업경험 무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Ⅱ유형</td><td>중위소득 100% 이하
(청년: 소득제한 없음)</td><td>무관</td><td>무관</td><td>취업활동비 지원</td></tr>
</table>